

## ●산림청고시 제2023-43호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06월 02일

산림청장

###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가. 보전산지 지정해제

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엽의 번호	구역의 표시
서울특별시	강동구	성동076	NJ52-9-12-076	준보전산지
경기도	남양주시	양수024	NJ52-9-13-024	준보전산지
경기도	가평군	양수020	NJ52-9-13-020	준보전산지
강원도	춘천시	내평005	NJ52-10-1-005	준보전산지
강원도	춘천시	화천086	NJ52-5-28-086	준보전산지
강원도	춘천시	용두007	NJ52-9-14-007	준보전산지
강원도	춘천시	춘천063	NJ52-9-7-063	준보전산지
강원도	춘천시	춘천069	NJ52-9-7-069	준보전산지
강원도	춘천시	춘천079	NJ52-9-7-079	준보전산지
강원도	춘천시	춘천096	NJ52-9-7-096	준보전산지
강원도	춘천시	춘천097	NJ52-9-7-097	준보전산지
강원도	춘천시	춘천098	NJ52-9-7-098	준보전산지
강원도	강릉시	강릉076	NJ52-10-5-076	준보전산지
강원도	강릉시	강릉075	NJ52-10-5-075	준보전산지
충청북도	충주시	엄정066	NJ52-10-22-066	준보전산지
충청북도	괴산군	충주088	NJ52-14-1-088	준보전산지
전라남도	광양시	하동079	NI52-1-28-079	준보전산지
경상남도	고성군	통영016	NI52-6-6-016	준보전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음 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지정해제 관계 도·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보전산지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